



노동부(www.molab.go.kr)전자민원창구

분야 | 산업안전보건체제

제목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총괄책임자 선임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합이 100인 이상이면 수급인의 근로자수(50명)와 관계없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신 총괄책임자만 선임하여 등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1차 금속산업, 신박 및 보트 건조업의 경우 50인 이상)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선임 등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노동부 시행령 [별표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 | 작업환경측정

제목 | 작업환경측정대상과 노출기준 고시

개정 2008. 6.17(노동부고시 제2008-26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법령에서 정하여 놓은 작업환경측정대상(화학적 인자 및 물리적 인자)인자만을 측정하면 되는지요?
2. 노동부고시 즉 "화학적 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고시되어 있는 인자에 대하여는 위의 1 이외의 경우에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3. 위의 1, 2는 물론 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에서 노출 기준을 채택하였으면 측정 대상이다. 등의 경우 중 어떻게 측정대상을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 보건법시행규칙 제 93조의 1에 따라 별표 11-4 의 화학적 인자와 물리적 인자와 분진만 포함됩니다. 노동부 고시에 정한 사항과 그 외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의 내용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측정대상에 있어 유해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적 측정 대상은 아니라 근로자 건강 보호의 책임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에 속합니다.

분야 | 산업안전보건

제목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된 소속근로자가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 의무주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설기계"에 속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시 건설기계 사업주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범주에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 건설기계장비가 건설현장에서 운행 중 건설중장비에 속한 근로자가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갑(건설회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을

(장비회사)"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질문1) 답변"이 "을"에게 책임이 있다면.(타워크레인도 최근에 건설기계로 편입) 만약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까지 포함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 타워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작업자가 안전사고 발생시 이들도 동일하게 건설기계 사업주 산재가 되는지요



1.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용중 발생한 사고건은 사고발생 경위에 따라 법적 책임문제가 따르므로 정확한 사항은 직접 사고를 조사하여야만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갑과 을이 모두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장비의 결함에 의한 사고는 을이, 관리감독 소홀인 경우 갑이 처벌을 받는 등 사고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2. 타워크레인도 금번 법 개정시 건설기계로 포함되어 산재처리(작용)을 받으나 장비업체 소속 직원(고용보험 가입 등 상근 직원에 한함)이 아닌 작업자해체, 설치작업을 도급 준 경우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건설업체(원청업체) 산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주체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발주자가 계약서의 내역서에 법적요율을 반영하여 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발주자와 계약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적요율이 반영되지 않아, 시공사에서 공사 실행을 계상할 때 법적요율을 반영하여 산업안전관리비 법적금액을 확보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적요율 계상 주체는 발주자와 시공자 중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적요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은 발주자와 시공사 중 어느 쪽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08.10.22 고시 제2008-67호)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계약서의 내역서에 법적요율을 반영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분야 | 노무안전

제목 | 단체협약으로 연간 노조 총회시간을 보장하는 경우의 해석

당사 단체협약은 "조합원 총회 8시간/연1회"로 규정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 연간 총회 8시간의 의미가 개별 조합원을 기준으로 연간 8시간의 총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총회의 총 소요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총회시간 보장은 근무로 인해 조합원이 실제 총회 개최시 이에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하여야 하는 총회시간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허용된 연간 총회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